DEDICA
-DEDICATED LAWYERS-

신규 정책 종합 2026년 9월 시행
기업 유의 사항

시행일: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근거: 시행령: 283/2026/ND-CP, 284/2026/ND-CP, 292/2026/ND-CP, 293/2026/ND-CP, 302/2026/ND-CP
시행규칙: 110/2026/TT-BTC

2026년 9월 상반기: 6개 법령 순차 시행

9월 1일

시행령 284/2026/ND-CP
암호자산 관련 행정위반 처벌
변경 8–10

9월 5일

시행령 292/2026/ND-CP
대외무역관리법 시행 지침
변경 6–7

9월 10일

시행령 283/2026/ND-CP
노동·사회보험 분야 행정위반 처벌
변경 1–3

9월 11일

시행령 293/2026/ND-CP
아포스티유 협약 이행
변경 4–5

9월 12일

시행규칙 110/2026/TT-BTC
세무 분야 법령 폐지
변경 13

9월 15일

시행령 302/2026/ND-CP
상품거래소를 통한 상품 매매
변경 11–12

사회보험 납부 회피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벌금 규정

기존

위반 행위:

의무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납부를 회피했으나 형사책임 추궁에 이르지 않은 경우.

→ **벌금: 50,000,000동~ 75,000,000동.**

근거: 시행령 12/2022/ND-CP 제39.7.a조, 제6.1조, 제6.3조

→

2026년 9월 10일부터

사회보험 납부 회피를 3가지 행위로 구체화: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행위.

→ **벌금: 6,000,000동~ 75,000,000동**, 위반 인원수에 따라 상이.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의무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신고한 행위.

사회보험법 제34조 제4항에 규정된 의무 사회보험료 최종 납부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신고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독촉을 받았으나 형사책임 추궁에 이르지 않은 행위.

→ **벌금:** 회피한 의무 사회보험료 총액의 **18%~20%**, 단 최대 **75,000,000동.**

근거: 시행령 283/2026/ND-CP 제44조, 제7.1조

유의: 위 벌금은 개인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업인 사용자는 2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 등록 정보의 등록·변경 규정 위반 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

기존

규정 없음

근거: 시행령 12/2022/ND-CP

2026년 9월 10일부터

- **근로자:** 노동 등록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 또는 허위로 제공한 경우 1,000,000~2,000,000동 벌금.
- **사용자:** 사회보험 서류 제출 시 노동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규모별 3단계로 벌금 부과:
 - 1~50명: 5,000,000~10,000,000동;
 - 51~100명: 10,000,000~15,000,000동;
 - 101명 이상: 15,000,000~20,000,000동.
- **결과 시정 조치:** 노동 등록 정보를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게 등록·변경하도록 강제.

근거: 시행령 283/2026/ND-CP 제12조, 제7.1조

유의: 위 벌금은 개인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업인 사용자는 2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관련 다수의 처벌 대상 행위

기존

외국인 근로자 사용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리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고 보고한 행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연장 후 관할 기관의 요청에도 체결된 근로계약서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 **벌금: 1,000,000동~3,000,000동.**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행위.

→ **벌금:** 1인당 **5,000,000동~10,000,000동**, 최대 **75,000,000동.**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없이, 또는 해당 허가서·확인서가 만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행위.

→ **벌금: 30,000,000동~75,000,000동**, 위반 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근거: 시행령 12/2022/ND-CP 제32조, 제6.1조

→

2026년 9월 10일부터

기존 벌금 수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위반 행위를 추가:

- **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를 회수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은 행위**: 1인당 500만~1,000만동, 최대 7,500만동.
- **노동허가서 발급, 재발급, 연장 서류를 변조·위조하거나 위조 서류를 사용한 행위**: 4,000만~6,000만동.
-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여러 성에서 근무하는 경우 통보하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행위**: 100만~300만동.

근거: 시행령 283/2026/ND-CP 제13조, 제7.1조

유의: 위 벌금은 개인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업인 사용자는 2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포스티유가 있는 공문서는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 영사인증 불필요

기존

외국 서류·문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려면 영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면제:

- 국제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 베트남과 외국의 관할 기관 간에 직접 또는 외교 경로로 전달된 경우.
- 베트남 법률상 면제되거나, 접수 기관이 영사인증·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근거: 시행령 111/2011/ND-CP 제4.2조, 제9조

→

2026년 9월 11일부터

협약 회원국의 아포스티유가 있는 공문서는 베트남에서 영사인증 없이 사용 가능.

- 베트남과 적용 관계가 있는 협약 회원국의 공문서로서 유효한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 영사인증이 면제되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베트남 내 기관·조직은 유효한 아포스티유가 있는 공문서에 대해 영사인증·영사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베트남어로 작성되지 않은 아포스티유 공문서는 베트남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은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특별법에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2026년 9월 11일 이전에 영사인증을 받은 공문서는 계속 유효하며, 아포스티유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293/2026/ND-CP 제25조, 제27.1조, 제36.2.a조

상업·세관과 직접 관련된 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받았더라도 접수 거부

기존

상업 서류를 포함한 모든 외국 서류에 단일 절차 적용: 영사인증

- 외국 서류·문서는 영사인증을 받아야 베트남에서 인정·사용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은 예외.

근거: 시행령 111/2011/ND-CP 제4.2조

→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는 사용 불가: 상업 또는 세관 활동과 직접 관련된 행정 서류

시행령 293/2026/ND-CP **제**26.1**조 규정**:

"베트남과 적용 관계가 있는 협약 회원국의 서류로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는 다음의 경우 베트남에서 접수가 거부된다: *1.* 아포스티유가 있는 서류가 서류 작성국 법률상 공문서가 아닌 경우, 외교관 또는 영사관이 작성한 서류인 경우, 또는 **상업 또는 세관 활동과 직접 관련된 행정 서류**인 경우."

근거: 시행령 293/2026/ND-CP 제26.1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기존

규정 없음

- 수입 금지 품목 목록에 해당 품목군이 없었음.

근거: 시행령 69/2018/ND-CP 부록 I

2026년 9월 5일부터

수입 금지 목록에 추가, 내무부 관할

시행령 292/2026/ND-CP 부록 I 제II부 제23항의 수입 금지 품목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기업, 국가, 지역으로부터 강제노동 행위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제품 및 상품"

근거: 시행령 292/2026/ND-CP 부록 I 제II부 제23항, 제5.2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 상인의 수출입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

기존

일반 원칙만 규정:

-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출입 시 국제조약상 베트남의 약속, 산업무역부가 공표한 상품 목록 및 이행 로드맵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 베트남 내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 및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지역과 베트남과 양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속한 기타 관련 조직·개인의 수출입 활동은 정부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시행령 69/2018/ND-CP 제3.2조, 제3.3조

→

2026년 9월 5일부터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 상인의 지점은 국제조약 및 산업무역부가 공표한 목록과 로드맵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이 가능:

- 자사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위탁 수출.
- 투자등록증상 투자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투자 활동을 위해 기계, 설비, 원자재 및 기타 상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위탁 수입

베트남 내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은 다음이 가능:

- 정부 규정에 따른 수출권 및 수입권 범위 내에서 영업.
- 자사를 위한 가공 계약 이행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 상인에게 인도하거나 임대·대여.
- 가공 계약에서 남은 가공 제품, 원료, 부자재, 자재, 부품, 반제품을 구매 또는 인수하여 수출품 생산용으로 국내 상인에게 판매.

근거: 시행령 292/2026/ND-CP 제3.2조, 제3.3조

재무부 인가를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암호자산 거래 행위에 구체적인 벌금 규정

기존

처리 원칙만 있고 벌금 규정 없음:

결의 05/2025/NQ-CP **제**7.2**조 규정**:

"최초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재무부가 인가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는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률 규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

근거: 결의 05/2025/NQ-CP 제7.2조

→

2026년 9월 1일부터

암호자산 거래 규정을 위반한 국내 투자자에 대한 벌금:

- 재무부가 인가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암호자산을 거래한 국내 투자자: 30,000,000동 ~ 50,000,000동 벌금.
-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모·발행된 암호자산을 거래한 국내 투자자: 70,000,000동 ~ 100,000,000동 벌금.
- 위 벌금은 조직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조직과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벌금은 조직 벌금의 1/2입니다.

근거: 시행령 284/2026/ND-CP 제9조, 제4.2조

무허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광고 시 최대 2억동 벌금

기존

의무 규정만 있고 벌금 규정 없음:

암호자산 거래는 재무부가 인가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결의 05/2025/NQ-CP 제7.3조

→

2026년 9월 1일부터

벌금, 부가 처벌 및 이에 상응하는 결과 시정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허가 없이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벌금 **1억 8,000만동~2억동**, 동시에 **불법 이익 반환** 및 **위반에 사용된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거래 시스템 또는 장비의** 삭제·제거가 강제됩니다.
- 위반 증거물·수단이 **불법으로 소비, 은닉 또는 폐기된 경우**, 기업은 **해당 증거물·수단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암호자산 관련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는**" 행위: **벌금** 1억 8,000만동 ~ 2억동, 동시에 **정보 삭제 및 정정이 강제됩니다**.

근거: 시행령 284/2026/ND-CP 제7.4조, 7.5조, 7.6조, 제4조

암호자산 거래 전용계좌 규정 위반 시 투자자 벌금 위험

기존

의무 규정만 있고 벌금 규정 없음: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외환 업무 수행·제공이 허가된 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 1곳**에 **베트남동(VND) 결제계좌 1개를 개설하여** 베트남 내 **암호자산 매매 관련 입출금 거래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결의 05/2025/NQ-CP 제13.1조

→

2026년 9월 1일부터

위반 정도에 따라 2단계 벌금 규정:

- **3,000만~5,000만동:** 베트남 내 암호자산 매매 관련 입출금 거래를 위한 결제계좌의 개설, 해지, 사용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
- **7,000만~1억동:** 전용계좌를 개설한 인가 은행에 제공한 서류, 문서, 정보, 데이터의 진실성, 적법성, 합법성을 보장하지 않거나, 베트남 내 암호자산 매매 관련 거래 내용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

위 벌금은 조직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조직과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벌금은 조직 벌금의 1/2입니다.

근거: 시행령 284/2026/ND-CP 제10.1조, 10.2조, 제4.2조

상품거래소 설립: 설립 요건 추가

기존

상품거래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설립 가능:

- 법정자본금 1,500억동 이상.
- 법령에 부합하는 운영 정관 보유.
- 사장 또는 총사장이 학사 이상 학위, 경제 또는 금융 분야 경력 5년 이상,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기업 경영 금지 대상이 아닐 것.
- 기업법에 따른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것.

근거: 시행령 158/2006/ND-CP 제8.1조(시행령 51/2018/ND-CP 제1.7조로 개정)

→

2026년 9월 15일부터

상품거래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설립 가능:

- 베트남에서 설립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비율 합계가 49%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정관자본금 1조 5,000억동 이상.
- 거래, 결제, 감독, 보안, 정보보호 및 데이터 연결 요건을 충족하는 IT 시스템 보유.
- 상품거래소 운영 모델 및 조직과 함께 베트남산 상품의 상장 방안 및 로드맵 보유.
- 법령에 부합하는 운영 정관 초안 보유.

근거: 시행령 302/2026/ND-CP 제5.1조, 5.2조, 제41.1조

외국인 투자자의 상품거래소 거래: 베트남 내 은행 계좌와 연계

기존

외국인 투자자는 고객으로서 상품거래소를 통한 상품 매매에 참여하거나, 정관자본금 소유 비율 제한 없이 상품거래소 회원(중개회원, 매매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158/2006/ND-CP 제16a.2.b조(시행령 51/2018/ND-CP로 신설)

→

2026년 9월 15일부터

-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상품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중 **베트남 내 상업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에 계좌를 보유한 자**는 상품거래소를 통한 상품 매매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302/2026/ND-CP 제18.3조, 18.4조

세무 분야 시행규칙 22건 및 결정 3건 전부 폐지

기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시행규칙 22건 및 결정 3건.

근거: 시행규칙 110/2026/TT-BTC 제1조

→

2026년 9월 12일부터

전부 효력 상실:

-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시행규칙 22건 및 결정 3건.

기업이 자주 참조하던 법령:

- ~~시행규칙 24/2002/TT-BTC~~: 금융리스 활동의 납세 의무.
- ~~시행규칙 123/2004/TT-BTC~~: 소프트웨어 기업 세제 혜택.
- ~~시행규칙 215/2013/TT-BTC~~ 및 ~~시행규칙 87/2018/TT-BTC~~: 세무 행정결정 강제집행.
- ~~시행규칙 127/2015/TT-BTC~~: 신설 기업 번호 부여 및 관할 세무기관 지정.
- ~~결정 78/2007/QĐ-BTC~~: 원스톱 방식의 세무 정책 질의응답 규정.

근거: 시행규칙 110/2026/TT-BTC 제1조, 제2.1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시행일, 대체 법령 및 유의할 경과 규정

법령	시행	대체 대상	유의할 경과 규정
시행령 284/2026/ND-CP	2026년 9월 1일부터 결의 05/2025/NQ-CP 효력 상실 시까지	신규 법령	결의 05/2025/NQ-CP 효력 상실 후 발생한 위반: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처리(제22.1조)
시행령 292/2026/ND-CP	2026년 9월 5일	시행령 69/2018/ND-CP	시행령 69/2018/ND-CP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허가 내용 및 기한대로 계속 유효(제64.1조)
시행령 283/2026/ND-CP	2026년 9월 10일	시행령 12/2022/ND-CP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시작되어 이후에도 계속되는 위반: 시행령 283/2026/ND-CP에 따라 처리(제67.2조)
시행령 293/2026/ND-CP	2026년 9월 11일	협약 비적용국에는 시행령 111/2011/ND-CP 병행 적용	2026년 9월 11일 이전 영사인증된 공문서는 계속 유효; 아포스티유 추가 요구 불가(제36.2.a조)
시행규칙 110/2026/TT-BTC	2026년 9월 12일	시행규칙 22건, 결정 3건	경과 규정 없음
시행령 302/2026/ND-CP	2026년 9월 15일	시행령 158/2006/ND-CP, 시행령 51/2018/ND-CP	기존 인가 거래소는 신규 요건 충족까지 12개월 유예(제41.1조)

DEDICA
—DEDICATED LAWYERS—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와 법률전문가가 언제든 지원해 드립니다. 심층 법률자문과 서비스는 지금 문의해 주십시오.

기업 및 투자
형사

상시 법률자문
인수합병(M&A)

분쟁 해결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치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쯩 171,
A&T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받으세요.